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42
----------	------

2025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정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혜경)

가.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거주지 등 지역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 삭제(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태 한)

###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자격 요건 중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임 제한 대상자를 공무원과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며, 결원 발생의 경우 의회 개회 여부에 따라 재선임 방법\*\*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의회 개회 중 의장 추천·의회 의결, 폐회 중 의장 직권 선임·다음 회기 승인

※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 15명 이상 20명 이내(의원 3명 이내)

####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 략) ② 검사위원은 <u>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u>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 ----- ----- ----- ----- ----- 본인과 그 -----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⑤ <u>결산검사기간</u> ----- ----- <u>결원이 발생하는 경우</u> <u>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u> ----- -----.

○ 재무국은 정부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한 요건 중 지역제한 문구(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를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858, 2023.10.31.

- 조문 정비를 통해 모호한 표현의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가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의장의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진입 규제 규정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조문을 장기간에 걸쳐 운용해 온 재무국의 조례 운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나. 세부내용 검토

### 1) 감사위원 지역제한 자격 요건 삭제(안 제3조제2항 전단)

○ 안 제3조제2항(전단)은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서울시에 거주 또는 근무자로 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역제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감사위원 지역제한 삭제 관련 신규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략) ② 감사위원은 <u>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u>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u> 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 ----- ----- ----- ----- ----- <u>본인과 그</u> ----- ----- <u>사람(이</u> ----- <u>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u> ----- <u>배우자등</u> -----.
1. 의원	1. ~ 5. (현행과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li> <li>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li> </ul> |
|--|

- 현행 본 조례에서 감사위원 자격 요건을 서울시 연고자\*로 제한한 취지는, 연고자로서의 감사위원이 보다 주체적으로 서울시 결산검사 및 심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 서울특별시 거주하고 있거나(1992.5.12. 제정),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2018.5.3. 일부개정)

- 「지방회계법」\*에서는 감사위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본 조례에서 감사위원 선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적인 결산업무 수행\*과 의회 의장의 감사위원 추천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 감사위원 선임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전문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본 개정안 제출일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감사위원 자격에 지역제한 요건을 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곳에 그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별 결산감사위원 거주지 제한 규정 여부 > ('24. 12. 17. 기준)

연번	지자체명	제한 요건	연번	지자체명	제한 요건	연번	지자체명	제한 요건
1	서울특별시	O	7	울산광역시	O→X ( '23.5)	13	전라남도	X
2	부산광역시	X	8	경기도	O	14	경상북도	X
3	대구광역시	X	9	강원도	X	15	경상남도	X
4	인천광역시	X	10	충청북도	X	16	제주특별자치도	X
5	광주광역시	O→X ( '22.5)	11	충청남도	X	17	세종특별자치시	O→X ( '23.11)
6	대전광역시	X	12	전라북도	X			

- 재무국은 감사위원에 대한 지역제한 요건을 본 조례 제정(1992.5.12.)\* 후 현재까지 장기간(약 33년) 운영해 왔음에도, 정부 기관의 규제개선 과제 통보\* 이후 상당한 기간(1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통보(공정거래위원회, 2023.10.31.)

- 이로 인해 감사위원의 진입규제를 제거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선안을 금번(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2025.2.18. 의회 의결)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본 개정안 지연 제출에 대한 재무국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동작구(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 변경 시 해촉) 외 24개 자치구는 2024년 12월까지 감사위원의 거주지 제한 조문을 미규정(2) 또는 삭제(21)하였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결산검사위원 거주지 제한 규정 여부>

(’24. 12. 17. 기준)

연번	지자체명	제한 요건	연번	지자체명	제한 요건	연번	지자체명	제한 요건
1	종로구	O→X (’14.4)	10	도봉구	O→X (’24.4)	19	영등포구	O→X (’24.11)
2	중구	O→X (’22.1)	11	노원구	O→X (’24.5)	20	동작구	O (해촉)
3	용산구	O→X (’23.4)	12	은평구	X	21	관악구	O→X (’24.4)
4	성동구	O→X (’23.11)	13	서대문구	O→X (’24.5)	22	서초구	O→X (’24.5)
5	광진구	O→X (’20.12)	14	마포구	O→X (’23.12)	23	강남구	O→X (’23.7)
6	동대문구	O→X (’24.12)	15	양천구	O→X (’23.3)	24	송파구	O→X (’23.9)
7	중랑구	O→X (’11.5)	16	강서구	O→X (’23.12)	25	강동구	O→X (’08.3)
8	성북구	O→X (’13.11)	17	구로구	X			
9	강북구	O→X (’24.5)	18	금천구	O→X (’23.3)			

2) 검사위원 선임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2항 후단)

- 안 제3조제2항(후단)은 현행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검사위원 선임 배제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 략)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본인과 그  
----- 사람이  
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

1. ~ 5.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포함)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하 “관련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이하 “배우자 등”)인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 장문으로 규정하여 가독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제외 대상자를 공무원의 배우자 등과 의원의 배우자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여 가독성을 제고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고, 의원은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인원 수 외 별다른 제한이 없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 3) 결원된 감사위원 선임 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5항)

○ 안 제3조제5항은 결산검사 기간 중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감사위원 선임 방법\*을 확인적으로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

- 의회의 개회 또는 폐회 여부에 따라 결원된 감사위원의 재선임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의회 폐회 중일때는 의장의 직권 선임 후 다음 회기에서 승인

#### < 결원된 감사위원 재선임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④ (생략)</p> <p>⑤ 결산검사기간-----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감사위원을 선임하며-----.</p>

**다. 기타(부칙)**

- 본 개정안에 대한 의회 본회의 의결일(2025.3.7.)은 재무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 선임(2025.2.18.) 이후로 계획되어 있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안 지연 제출로 인하여 개선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2025년도(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 재무국은 부적정한 관행 유지를 지양하고, 서울시 전체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b>본 일부개정조례안</b>
<b>부 칙</b>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2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거주지 등 지역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 삭제(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11. 14. ~ 12. 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 2133-3239)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및 의원의”를 “본인과 그”로,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을 “결산검사기간”으로, “결원된 때는”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략)</p> <p>② <u>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u>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u>의원의 배우자</u>,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u>사람은</u>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5. (생략)</p> <p>③·④ (생략)</p> <p>⑤ <u>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다음</u> -----</p> <p>-----</p> <p>-----</p> <p>-----</p> <p>-----</p> <p>-----</p> <p>-----</p> <p>-----</p> <p>----- <u>본인과 그</u> -----</p> <p>----- <u>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u>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결산검사기간</u>-----</p> <p>----- <u>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하며</u>-----</p> <p>-----</p>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주무관(2133-3239)